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46호)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38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11
1. 총괄	11
가. 입법배경	11
나. 주요내용	14
다. 주요쟁점	16
2. 조문별 검토	20
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20
1)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20
2) 거래소지주회사 관련 총칙	24
3) 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 등	31
4)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유규제 및 감독 등	48
나. 시장감시법인의 설립·운영	60
1) 시장감시 등의 업무 위탁	60
2) 시장감시법인 관련 총칙	64
3) 시장감시법인의 조직	67
4) 시장감시법인의 감독 등	74

다. 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	79
1) 거래소의 업무 추가	79
2) 청산·결제업무의 위탁	81
3) 거래소의 지배구조	85
4) 거래소 규정의 정비	90
5) 주식소유의 제한	92
6) 기타	93

I. 제안경위

1. 김태년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28인

나. 제 안 일 : 2026. 2. 6.

다. 회 부 일 : 2026. 2. 9.

2. 이현승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6. 3. 4.

다. 회 부 일 : 2025.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태년의원안

가. 제안이유

코스닥은 기술·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오랜 기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

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상장·감시·퇴출 기준이 코스피와 유사한 틀 안에서 운영되면서, 성장기업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신속한 시장 운영이 어려웠고, 그 결과 코스닥의 경쟁력과 신뢰가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 기능의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도 높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이자 모험자본이 선순환하는 시장으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나. 제안이유

1)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가)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및 허가 등(안 제8조의2제5항 및 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6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나)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14조의7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자회사등에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 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안 제414조의8부터 제414조의10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하고, 이사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

라) 임직원의 겸직 및 업무의 위탁(안 제414조의11부터 제414조의13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상호간의 임직원 겸직과 자회사등의 업무 위탁 시 내부 기준을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유 규제(안 제414조의14부터 안 제414조의18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거래소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소유 상한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 금융위원회의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2) 시장감시법인 신설

가) 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02조의2 신설)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함.

나) 시장감시법인의 설립(안 제414조의19 및 제414조의20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시장감시법인의 업무 등(안 제414조의23부터 제414조의25까지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시장감시업무 및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거래소지주회사, 거래소 및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는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라) 시장감시법인의 임원 등(안 제414조의26 신설)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하고, 독립이사가 이사회에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함.

마)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등에 대한 협의(안 제414조의28 신설)

시장감시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거래소가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법인과 사

전 협의하여야 함.

바)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 등(안 제414조의30부터 제414조의32까지 신설)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 권한 및 정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등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을 규정함.

3) 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 및 지배구조 관련 조문 정비

가)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안 제378조제3항 신설)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청산·결제기관으로서의 지정거래소의 권리·의무는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모두 귀속되도록 함.

나) 거래소의 지배구조 관련(안 제380조, 제381조 및 제385조)

거래소의 이사장을 사장으로 하며,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이헌승의원안

가. 제안이유

코스닥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장이나, 그

간 코스피와 통합된 운영체계 아래에서 시장 간 기능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스닥 본연의 역할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상장·감시 및 퇴출 제도가 코스피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성장 단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시장의 차별성과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 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독립적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종전 부칙에서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한 입법 취지의 연속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하여,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이자 모험자본이 선순환하는 시장으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금융중심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나. 제안이유

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가)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및 허가 등(안 제8조의2제5항 및 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7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아울러 이 법 시행 당시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거래소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

나)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14조의8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자회사등에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 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안 제414조의9부터 제414조의11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하고, 이사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

4) 임직원의 겸직 및 업무의 위탁(안 제414조의12부터 제414조의14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상호간의 임직원 겸직과 자회사등의 업무 위탁 시 내부 기준을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5)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유 규제(안 제414조의15부터 안 제414조의19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거래소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소유 상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나. 시장감시법인 신설

1) 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02조의2 신설)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함.

2) 시장감시법인의 설립(안 제414조의20 및 제414조의21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시장감시법인의 업무 등(안 제414조의24부터 제414조의26까지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시장감시업무 및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거래소지주회사, 거래소 및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는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4) 시장감시법인의 임원 등(안 제414조의27 신설)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하고, 독립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함.

5)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협의(안 제414조의29 신설)

시장감시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거래소가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법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6)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 등(안 제414조의31부터 제414조의33까지 신설)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 권한 및 정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등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을 규정함.

다. 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 및 지배구조 관련 조문 정비

1)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안 제378조제3항 신설)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청산·결제기관으로서의 지정거래소의 권리·의무는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모두 귀속되도록 함.

2) 거래소의 지배구조 관련(안 제380조, 제381조 및 제385조)

거래소의 이사장을 사장으로 하며,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IV. 검토의견

1. 총괄

가. 입법배경

□ 최근 정보기술 발전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해외 주요 거래소는 사업영역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수·합병(M&A) 및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한편, 지주회사 체제의 도입, 거래소 상장 및 사업 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영리성과 시장감시기능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와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거래소의 조직 및 운영방식도 변화하는 추세에 있음.¹⁾

○ 해외 주요국의 거래소 형태 및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거래소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조직을 시장별 또는 기능별로 분화하여 운영하고, 시장감시기능도 거래소와 분리하거나 자회사 또는 독립된 자율규제기구 등이 수행하는 등 거래소의 전문성과 시장감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1) 금융개혁자문단·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2015. 7.

[표1] 해외 주요국 거래소 형태 및 규제체계

구 분		미국 (NYSE)	캐나다 (TSX)	독일 (DB)	홍콩 (HKEX)	일본 (JPX)	싱가폴 (SGX)	영국 (LSE)	호주 (ASX)
거래소 법적형태		주식회사 (지주회사)	주식회사 (지주회사)	주식회사 (지주회사)	주식회사 (지주회사)	주식회사 (지주회사)	주식회사 (지주회사)	주식회사 (지주회사)	주식회사 (지주회사)
상장일		'06.3월	'02.11월	'01.2월	'00.6월	'13.1월	'00.11월	'01.7월	'98.10월
규제법		'34년 증권거래법	금융상품 거래법	州 거래소법, 연방증권 거래법	증권선물 조례	금융상품 거래법	증권선물법	금융서비스 시장법 2000	금융서비스 시장법
공적 규제기구		증권거래 위원회 (SEC)	州 증권거래 위원회 (OSC 등)	州 거래소 감독청, 연방금융 감독청 (BaFin)	증권선물 위원회 (SFC)	금융청(FSA),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 (SESC)	싱가폴 통화청 (MAS)	금융청 (FCA)	증권투자 위원회 (ASIC)
자율 규제 체계	기구	NYSE Regulation, FINRA	CIRO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HKEX (지주회사)	JPX-R (JPX의 자회사)	SGX RegCo (SGX의 자회사)	LSE	ASX Compliance (ASX의 자회사)
	형태	In-House 型 (거래소 내부기구), 독립기구 型	독립기구 型	In-House 型 (거래소 내부기구)	In-House 型 (지주회사 내)	자회사 型	자회사 型	감독기구 型	감독기구 型
자율규제 근거규정		'34년법 §3(b), 15(b) 등	온타리오州 증권법 §21.1	연방거래소법 §3·7	증권선물조례 §21	금융상품 거래법 §84, 102-2 ~102-39	증권선물법 §15	FSMA 2000 §285·286	회사법 2001 §792A 등
자율 규제 기능별 담당 기관	상장	NYSE	TSX	DB	SEHK (현물거래소)	JPX-R	SGX RegCo	FCA	ASX Comp.
	공시	"	"	"	"	"	"	"	"
	감시	NYSE Regulation	CIRO	"	HKEX(지주)	"	"	LSE	ASIC
	심리	NYSE Regulation (거래소시장) FINRA(연계시장)	"	"	"	"	"	FCA	"
	감리	NYSE Regulation (규정위반) FINRA(회 원 관련)	"	"	SEHK	"	"	LSE	ASX Comp.
	제재	"	"	"	"	"	"	"	"
	분쟁	FINRA	OBSI	"	FDRC	FINMAC	FIDRC(개인) SIAC(기관)	FOS	AFCA

(자료: 한국거래소)

-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선물거래소를 통합한 이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을 하나의 거래소가 통합 운영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음.
- 그러나 현행 체제에서는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에 한계가 있고, 거래소가 시장운영과 시장감시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개정안들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별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감시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그림1] 거래소지주회사 체계(예시)



나. 주요내용

□ 개정안들은 ① 거래소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②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및 운영, ③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 등 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2]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조항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 (정의) 주식 소유를 통하여 거래소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안 §8의2⑤
	○ (총칙) 허가, 소재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김태년안 §414의2~§414의6 이현승안 §414의2~§414의7
	○ (조직 등) 업무, 임원, 이사회,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임직원 겸직, 업무 위탁 등	김태년안 §414의7~§414의13 이현승안 §414의8~§414의14
	○ (소유규제 및 감독 등) 자회사등 편입, 자회사등 사이의 주식소유 특례, 거래소지주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김태년안 §414의7~§414의13 이현승안 §414의8~§414의14
시장감시법인 설립·운영	○ (시장감시 업무위탁) 거래소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단, 거래소 상장 시 전부 위탁)	안 §402의2 등
	○ (총칙) 설립, 인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김태년안 §414의19~§414의22 이현승안 §414의20~§414의23
	○ (조직) 업무, 회원, 정관, 임원, 정보이용금지, 거래소와의 협의	김태년안 §414의23~§414의29 이현승안 §414의24~§414의30
	○ (감독 등)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조치, 임직원 제재조치 및 벌칙	김태년안 §414의30~§414의32 이현승안 §414의31~§414의33
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	○ (거래소 업무 추가) 지역소재 법인의 주권상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이현승안 §337①
	○ (청산·결제업무 위탁)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	안 §378③
	○ (거래소 지배구조) 이사 정원 삭제, 상근 감사위원 선임 의무→자율	안 §380, §381, §385
	○ (거래소 규정 정비) 회원관리규정에 회원 종류에 관한 사항 추가, 상장규정에 금융위원회 고시 반영	안 §387, §390③
	○ (주식소유 제한) 외국거래소지주회사의 거래소 주식 보유 허용	안 §406①
	○ (기타) 청문, 보고·조사, 벌칙, 과태료 등	안 §423, §426, §436, §444, §445

- 구체적으로, 개정안들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및 허가요건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업무범위 및 주식소유 제한 등 소유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시장감시법인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를 위탁받는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감시법인의 업무·임원·업무규정·감독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 업무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의 지배구조, 운영규정 및 감독체계 등을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다. 주요쟁점

- 개정안은 거래소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을 통해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거래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감시기능의 독립성과 청산·결제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거래소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의 운영 주체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경영성과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시장별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자회사를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거래소의 경쟁력과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코스닥시장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확대 및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시장감시업무를 별도의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기능과 시장감시기능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고 시장감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거래소지주회사 체제의 도입과 시장감시·청산·결제 기능의 분리 등이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일한 거래소지주회사 아래에서 시장별 거래소를 운영하는 구조가 실질적인 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직 개편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및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²⁾ 등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시장감시기능과 청산·결제기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시장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약화되어 감시기능이 저하되거나, 규모의 경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 효율적인 감시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 공시 및 거래현황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시장운영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두 기능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거래소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 각 시장별 거래소 및 시장감시법인 등의 설립·운영에 따라 임직원과 조직이 확대되고 운영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회사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부담이 거래수수료 인상 등 시장참여자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대규모·실시간 매매거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부담하기 위한 대규모의 재원 및 자본이 필요한바, 장내시장에서의 대규모·실시간 거래에 대한 청산업무를 거래소 또는 지정거래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산체계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들에 대하여는 거래소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감시기능의 독립성 강화라는 기대효과와 함께 거래소지주회사 체제의 실효성,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의 독립성과 거래소 경쟁력 강화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과 시장감시·청산·결제 기능의 분리는 자본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거래소는 거래소지주회사 전환³⁾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본점 소재지, 코스닥시장 분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노사관계⁴⁾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

3) 지주회사 전환은 자본시장 구조 및 참여자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기관의 공익성과 정책적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거래소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은 제19대 국회⁵⁾ 및 제20대 국회⁶⁾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4) 지주회사 전환 시 자회사 직원 배치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KRX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하나, 현재 거래소 노조는 코스닥 자회사 분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거래소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 ② 거래소는 회사의 분할, 합병, [...] 등으로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은 초래하는 경우 [...] 고용 및 근속년수, 단체협약 승계 등에 합의하여야 한다.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 9. 3.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16720호)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6. 7. 11.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0773호)

2. 조문별 검토

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1)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 개정안들은 “거래소지주회사”를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① 하나 이상의 거래소를 지배하고, ② 거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 자회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5항).

현 행	김태년의원안·이현승의원안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법에서 “거래소지주회사”란 <u>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제414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u> 1. 하나 이상의 거래소를 지배할 것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헌승의원안
⑤ (생략)	2. 거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 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거래소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⁷⁾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⁸⁾와 같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8)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

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시장 인프라인 거래소를 지배하는 회사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및 허가요건 등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거래소지주회사 도입의 필요성을 전제로 개정안들을 검토하면, 현행 법은 거래소를 하나의 법인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래소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뒷받침하는 거래소의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주식의 소유한도 제한, 임원의 자격요건, 정관변경 승인 등 별도의 규제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및 허가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들에 따른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규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 첫째, 개정안들은 거래소지주회사를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의

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가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입법례⁹⁾를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지배의 대상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거래소,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대체하여 규정하고 있음.

- 둘째, 개정안들은 거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 자회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자회사 자산총액 비율¹⁰⁾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소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 핵심 자회사의 자산총액 비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관련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저

9)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10)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하되고 과도한 사업 다각화로 인하여 지주회사 전체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반면, 반대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거래소지주회사의 공공성과 사업 확장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거래소지주회사 관련 총칙

□ 개정안들은 제7편의2 제1장에서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재지, 거래소지주회사 허가절차의 준용, 허가받을 의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6까지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7까지).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현승의원안
<신 설>	<u>제7편의2 거래소지주회사</u>	<u>제7편의2 거래소지주회사</u>
<신 설>	<u>제1장 총칙</u>	<u>제1장 총칙</u>
<신 설>	<u>제414조의2(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 ① 제8조의2제5항 각 호의 거래소지주회사 요건 (이하 “거래소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u>	<u>제414조의2(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 ① ~ ④ (김태년의원안과 같음)</u>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일 것 2.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거래소지주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정관이 법령에 적합할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거래소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자회사등을 지배함에 있어서 제2항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신설>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4조의3(거래소지주회사의 소재지)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가 제414조의2에 따라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신설>	제414조의3(준용규정)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에 관하여 제373조의3 및 제373조의4를 준용한다.	제414조의4(준용규정)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3과 같음)
<신설>	제414조의4(허가받을 의무 등) ① 자회사 주식의 가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대상거래소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대상거래소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414조의5(허가받을 의무 등) ① ~ ③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4와 같음)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간 이내에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신 설>	<u>제414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거래소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414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u>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5와 같음)
	<신 설>	<u>제414조의6(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의3, 제6조의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44조, 제47조제5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조 및 제62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u>	<u>제414조의7(다른 법률과의 관계)</u>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6과 같음)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각 개정안 제414조의2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요건으로 ① 주식회사 요건, ② 자기자본 요건, ③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요건, ④ 정관의 법령 적합성 요건, ⑤ 임원 적격성, ⑥ 대주주 요건, ⑦ 사회적 신용 요건, ⑧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요건(대주주 요건 제외)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거래소지주회사를 허가제로 규정한 것은 거래소지주회사가 거래소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들은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회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시장운영자이자 시장감시기구로서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거래소를 핵심 자회사로 두는 거래소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시장참가자의 자회사 편입을 제한할 필요는 없겠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들은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신설하면서 유지대상에서 대주주 요건을 제외하고 사회적 신용요건은 포함하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들은 허가요건 유지의무에서 대주주 요건을 제외하고 있는바, 허가 이후 대주주의 적격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대주주 변경 등을 통하여 사실상 허가요건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주주 요건을 유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사회적 신용요건을 허가요건 유지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사회적 신용은 사후적인 법령 위반 등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요건으로서 이를 유지의무에 포함할 경우 사회적 신용의 변동에 따라 허가요건 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11) 현행법은 거래소,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사회적 신용요건을 허

□ 한편,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3은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2013년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칙(법률 제11845호)을 통하여
한국거래소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규정¹²⁾한바, 개정안은
거래소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거래소를 포함한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로서의 기
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는 기관의 공익성과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소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부
산광역시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허가제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은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래소 본점을 부산광
역시에 두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있는 점, 현재 한국거래소 본사가

가 또는 인가요건 유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제15조(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는 제3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에 대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성립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로서 그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소, 제3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산기관 및 제3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제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제39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본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 개정안이 거래소 소재지의 실질적 변동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거래소지주회사 및 자회사 본점 소재지를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향후 설립될 수 있는 모든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바, 기존 한국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유지하려는 취지라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입법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3) 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 등

- 각 개정안 제7편의2 제2장에서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 임원, 이사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임직원의 겸직 등, 업무의 위탁, 준용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김태년 의원안 제414조의7부터 제414조의13까지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8부터 제414조의14까지).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제380조(임원) ① <u>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u> <u>1. 이사장 1인</u>	제380조(임원) ① <u>거래소의 임원은 사장, 시장, 감시위원장 및 이사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u>	제380조(임원) (김태년의원안과 같음)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2.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② (생략) ③ <u>이사장</u>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385조제1항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u>이사장</u>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요구된 <u>이사장</u>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사장</u>----- ----- ----- ----- ----- ----- ----- ----- ----- -----. ④ ----- -----<u>사장</u>----- ----- ----- ----- ----- ----- ----- ----- ----- ----- ----- -----<u>사장</u>----- -----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신설>	제2장 조직 등	제2장 조직 등
<신설>	제414조의7(업무) 거래 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 무, 그 밖에 자회사등 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 통적으로 수행할 필요 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 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414조의8(업무) (김태 년의원안 제414조의7과 같음)
<신설>	제414조의8(임원) ① 거 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인 감사 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한다.	제414조의9(임원) ①·② (김태년의원안 제414조 의8과 같음)
	②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과 이사회에 관하 여는 제3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382조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사장”은 “회장”으로 본 다.	
<신설>	제414조의9(이사회) ①	제414조의10(이사회) ①·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신 설></u>	<u>거대소지주회사에 제414조의8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②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u>②_(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9와 같음)</u>
	<u>제414조의10(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대소지주회사에 회장 및 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u> <u>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u>③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u>	<u>제414조의11(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 ③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0과 같음)</u>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신설>	관으로 정한다. <u>제414조의11(임직원의 겸직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u> 1. <u>거래소지주회사의 임직원이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u> 2. <u>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u> ② <u>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은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u>	<u>제414조의12(임직원의 겸직 등) ① ~ ⑤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1과 같음)</u>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검직기준</u>”이라 한다)을 <u>갖추어 미리 금융위원</u> <u>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u> <u>다. 다만, 이해상충이</u> <u>발생하거나 또는 회사</u> <u>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u> <u>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경</u> <u>우에는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u> <u>따라 금융위원회에 보</u> <u>고하여야 한다.</u> 1. <u>검직하는 회사에서</u> <u>수행하는 업무의 범위</u> 2. <u>검직하는 업무의 처</u> <u>리에 대한 기록 유지</u> <u>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이해상충 방</u> <u>지 또는 회사의 건전</u> <u>성 유지를 위하여 필</u> <u>요한 사항으로서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u>금융위원회는 제1항</u> <u>에 따른 임직원 검직이</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u> <u>는 해당 거래소지주회</u> <u>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u> <u>대하여 해당 임직원 검</u>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u>1.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u> <u>2.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u>3. 거래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경우</u> <u>④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은 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거래소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이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u>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한 경우</u> 2. <u>고객이 거래 당시에</u> <u>임직원 겸직에 따른</u> <u>이해상충 행위라는 사</u> <u>실을 알았거나 이에</u> <u>동의한 경우</u> 3. <u>그 밖에 거래소지주</u> <u>회사와 그 자회사등의</u> <u>책임으로 돌릴 수 없</u> <u>는 사유로 손해가 발</u> <u>생한 경우로서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⑤ <u>제2항에 따른 승인</u> <u>· 보고의 대상이 되는</u> <u>임직원의 범위, 승인·</u> <u>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u>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u>제414조의12(업무의 위</u> <u>탁) ① 거래소지주회사</u> <u>의 자회사등은 영위하</u> <u>는 업무의 일부를 해당</u> <u>거래소지주회사 또는</u> <u>해당 거래소지주회사에</u> <u>속하는 다른 자회사등</u> <u>에 위탁할 수 있다. 다</u> <u>만, 고객과의 이해상충</u> <u>이 발생하거나 건전한</u> <u>거래질서를 해할 우려</u> <u>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u>	<u>제414조의13(업무의 위</u> <u>탁) ① ~ ④ (김태년</u> <u>의원안 제414조의12와</u> <u>같음)</u>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u>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무위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의 발생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1. <u>위탁하는 업무의 범위</u> 2. <u>수탁하는 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u> 3. <u>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u>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4. 그 밖에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업무위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승인·보고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14조의13(준용규정) 거래소지주회사 및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직원	제414조의14(준용규정)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3과 같음)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에 대하여는 제63조, 제376조제2항, 제383조제1항·제2항 및 제3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지주회사”로 본다.</u>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7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8은 거래소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부수 업무, 그 밖에 자회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¹³⁾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

1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부수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경영관리업무 외에도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로 운영할 수 있는바, 「금융지주회사법」이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지주회사의 부실이 자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여 금융소비자 및 금융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부수업무, 그 밖에 자회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영위하도록 하고 있는바, 순수지주회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통업무의 수행을 허용하고 있음.

- 개정안들이 위와 같이 업무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① 거래소지주회사의 부실이 자회사인 거래소에 전이되어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② 거래소 단일법인의 공통기능을 자회사별로 분산할 경우 조직 비대화 및 운영비용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를 지주회사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한편,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8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9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을 회장, 상근 감사위원 및 이사로 하고, 거래소의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거래소지주회사에는 상근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거래소의 상근 감사위원은 임의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안 제380조), 이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총괄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근 감사기능의 중심을 거래소지주회사에 두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0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11은 거래소지주회사 회장 및 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가 총 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거래소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5인,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하는 2인 및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¹⁴⁾함으로써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계와 상장회사의 참여를 법률상 보장하고 있음.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래소에 이사장·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반면, 개정안들은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원칙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에 대하여는 거래소지주회사의 공공성과 위원회 구성의 탄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계 및 상장회사의 참여를 법률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1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12는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¹⁶⁾의 임직원이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 간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보고 절차, 겸직기준 미충족 또는 거래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연대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2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13은 거래소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간의 업무위탁을 허용하면서,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보고, 업무위탁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5) 참고로, 개정안들(안 제385조)은 현행 거래소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삭제하고,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원칙만 규정하도록 변경하고 있음.

16) 거래소지주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 개정안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겸직 및 내부통제기준¹⁷⁾과 「금융지주회사법」 상 업무위탁 규정¹⁸⁾을 참고하여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거래소지주회사

17)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이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2.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에 도입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자회사별 업무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비효율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직원의 겸직 및 업무위탁으로 인한 이해상충 등의 우려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보고, 업무위탁기준, 시정명령 및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연대배상책임 등을 통하여 통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이 외국 자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⑤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등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승인·보고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등의 범위,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유규제 및 감독 등

□ 각 개정안 제7편의2 제3장에서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유 규제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회사등의 편입, 자회사등 사이의 주식소유 특례, 거래소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조치 및 준용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4부터 제414조의18까지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15부터 제414조의19까지).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현승의원안
<신 설>	제3장 소유 규제 및 감독 등	제3장 소유 규제 및 감독 등
<신 설>	제414조의14(자회사등의 편입) ① 거래소지주회사(다른 거래소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거래소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회사등을 새로이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거래소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거래소지주회사	제414조의15(자회사등의 편입) ① ~ ⑦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4와 같음)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거래소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등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u> <u>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거래소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u>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u> <u>2.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u> <u>3. 주식교환에 따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u> <u>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u>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기한을 정하여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5항에 따라 주식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및 승인의 세부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14조의15(자회사등 사이의 주식소유 특례)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4조의16(자회사등 사이의 주식소유 특례)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5와 같음)
<신설>	제414조의16(거래소지주회사의 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414조의17(거래소지주회사의 주식소유의 제한) ① ~ ③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6와 같음)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소유할 수 없다.</u> 1. <u>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 2. <u>외국 거래소 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소유를 승인한 경우</u> 3. <u>거래소지주회사가 소유하는 경우</u> 4. <u>정부가 소유하는 경우</u> 5. <u>그 밖에 거래소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u> 1. <u>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u>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u> 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u> 3. <u>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③ <u>거래소지주회사의 주식소유의 제한에 관하여 제406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u>	
<신설>	제414조의17(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u>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u> 2. <u>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u> 3. <u>제414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u> 4. <u>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u> 5. <u>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u>	제414조의18(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⑤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7과 같음)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니한 경우</u> 6. <u>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7.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8. <u>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② <u>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 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 1. <u>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u> 2. <u>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u> 3. <u>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포명령 또는 게시명령</u> 4. <u>기관경고</u> 5. <u>기관주의</u>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u>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 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 <u>1. 해임요구</u> <u>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u> <u>3. 문책경고</u> <u>4. 주의적 경고</u> <u>5. 주의</u> <u>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u>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 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지주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u>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1. 면직</u> <u>2. 6개월 이내의 정직</u> <u>3. 감봉</u> <u>4. 견책</u> <u>5. 경고</u> <u>6. 주의</u> <u>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u>⑤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임직원</u> <u>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소지주회사”로 본다.</u>	
<신설>	<u>제414조의18(준용규정)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제407조, 제408조, 제409조제1항 및 제4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지주회사”로 본다.</u>	<u>제414조의19(준용규정)</u>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8과 같음)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4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15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새로이 편입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등의 편입요건, 주식처분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거래소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도록 한 것은 거래소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입대상 자회사등의 사업계획과 거래소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경영관리상태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특히, 부채를 통한 자회사등의 주식소유로 거래소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거래소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5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16은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사이의 주식소유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2호¹⁹⁾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자회사

19)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가. 해당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 직접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소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등 간의 협력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6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17은 집합투자 기구가 소유하는 경우, 외국 거래소 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그 밖에 거래소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거래소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래소지주회사 주식의 소유를 제한한 것은 거래소를 핵심 자회사로 두는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특정 주주가 거래소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운영을 담보하려는 취지로서, 현행법상 거래소에 대한 주식소유의 제한 규정²⁰⁾과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두려는 것으로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이해됨.

○ 한편, 집합투자기구, 외국 거래소 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와의 제휴,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정부의 주식소유 등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은 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지분보유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 중 외국 거래소 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00분의 20 이내에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및 협력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법정상한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특정 외국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7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18은 거래소지주회사가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허가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기관에

수 없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3.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한 조치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거래소지주회사의 공공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허가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기관제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실효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나. 시장감시법인의 설립·운영

1) 시장감시 등의 업무 위탁

- 각 개정안은 거래소가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위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2조의2 등).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현승의원안
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6조(정관) ①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사항(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402조의2(시장감시 등의 업무 위탁) ① 거래소는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지주회사의 제4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등인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헌승의원안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생략)	다)는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u>이상거래의 심리</u>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0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시장감시, 이상 거래의 심리----- -----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에 대한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거래참가자 등에 대한 감리, 분쟁조정업무(이하 “시장감시업무”)를 각각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거래소

는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거래소시장과 ATS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²¹⁾

□ 시장감시업무는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거래소의 핵심적인 자율규제 기능에 해당하나, 거래소가 시장운영 기능과 시장감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현행 구조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거래소와 경쟁관계에 있는 ATS에 대한 시장감시업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품문·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 감시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구조 역시 시장감시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들은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인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기상장 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는 전부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 기능과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하여 시장감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효율적인 감시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 공시 및 거래 현황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시장운영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두 기능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시장감시법인 관련 총칙

□ 각 개정안 제7편의3 제1장은 시장감시법인의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인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용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9부터 제414조의22까지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20부터 제414조의23까지).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현승의원안
<신 설>	<u>제7편의3 시장감시법인</u>	<u>제7편의3 시장감시법인</u>
<신 설>	<u>제1장 총칙</u>	<u>제1장 총칙</u>
<신 설>	<u>제414조의19(설립)</u> ①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u>제414조의20(설립)</u> ①·②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9와 같음)
<신 설>	<u>제414조의20(인가)</u> ① 제414조의23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u>제414조의21(인가)</u> ① ~ ④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0과 같음)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2. 정관, 시장감시규정 및 분쟁조정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4조의21(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시장감시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시장감시법인”, “자율규제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4조의2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1과 같음)
	<신 설>	제414조의22(준용규정) ① 시장감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에	제414조의23(준용규정) ①·②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2와 같음)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관하여 제323조의4 및 제323 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는 “시장감시법인”으로 본다.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19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20은 시장감시 법인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0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21은 시장감시 법인이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요건 및 인가요건 유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시장감시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가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전문성·독립성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1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22는 시장감시 법인이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고,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2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23은 시장감시법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

산회사 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시장감시법인의 조직

□ 각 개정안 제7편의3 제2장은 시장감시법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감시법인의 업무, 회원, 정관, 임원, 정보이용금지, 거래소와의 협의 및 준용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3부터 제414조의29까지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24부터 제414조의30까지 등).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현승의원안
<신 설>	제414조의23(업무) ① 시장감시법인은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은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4조의24(업무) ①·② (김태년의원안제414조의23과 같음)
<신 설>	제414조의24(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제414조의25(회원) (김태년의원안제414조의24와 같음)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될 수 있다. 1. <u>거래소지주회사</u> 2. <u>거래소</u> 3. <u>다자간매매체결회사</u>	
<신설>	제414조의25(정관) 시장감시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u>목적</u> 2. <u>명칭</u> 3. <u>출자에 관한 사항</u> 4. <u>회원에 관한 사항</u> 5. <u>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u> 6. <u>임원에 관한 사항</u> 7. <u>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u> 8. <u>이사회에 관한 사항</u> 9. <u>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u> 10. <u>회계에 관한 사항</u> 11. <u>광고방법</u>	제414조의26(정관) (김태년의원안제414조의25와 같음)
<신설>	제414조의26(임원 등) ①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독립이사(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상근 임원 또는 집행간부이거나 상근 임원 또는 집행간부이었던 자가 아닌 자로서 선임된 이사를	제414조의27(임원 등) ① ~ ⑧ (김태년의원안제414조의26과 같음)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이사회와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장감시법인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이사회와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고, 독립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법인의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시장감시법인은 2개월 이내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14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구성, 선임 방법·절차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제414조의27(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제414조의28(정보이용금지 등) ① ~ ③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7과 같음)

현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아니 된다. ② 시장감시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신설>	제414조의28(거래소 업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협의)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거래소는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감시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4조의29(거래소 업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협의) (김태년의원안제414조의28과 같음)
<신설>	제414조의29(준용규정) 거래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시장감시법인에 대하여는 제403조부터 제40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14조의30(준용규정) (김태년의원안제414조의29와 같음)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3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24는 시장감시법인이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시장감시업무 및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제3자 재위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감시법인이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시장감시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정보유출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4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25는 거래소지주회사, 거래소 및 ATS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5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26은 시장감시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6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27은 시장감시법인의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독립이사의 선임, 이사장의 자격 및 선임절차, 임기, 해임요구, 임원의 자격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emf은 시장감시법인의 이사회에서 독립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고, 독립이사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이사장은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감시업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독립이사의 추천을 외부기관이 하도록 하면서도 외부기관의

범위 및 추천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바, 시장감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의 선정기준 및 추천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7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28은 시장감시법인 임직원의 비밀누설 및 정보이용을 금지하고, 금융투자업자 등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현행법 제383조²²⁾에서 거래소 임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 및 정보이용 금지, 금융투자업자 등과의 특별한 이해관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시장감시법인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시장감시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고 시장감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28 및 이현승의원안 제414조의29는 거래소가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감시법인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거래소의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업무관련 규정 변경 과정에서 시장감시법인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장감시업무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4) 시장감시법인의 감독 등

- 각 개정안 제7편의3 제3장은 시장감시법인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
로,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30부터 제414조의
32까지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31부터 제414조의33까지).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신 설>	제3장 감독 등	제3장 감독 등
<신 설>	<u>제414조의30(시장감시법인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4조의20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u> <u>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0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u> <u>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u> <u>3. 제414조의20제4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u>	<u>제414조의31(시장감시법인에 대한 조치) ① ~ ⑤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30과 같음)</u>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거나 별표 14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u> <u>또는 게시명령</u> 4. <u>기관경고</u> 5. <u>기관주의</u>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 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 인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 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할 수 있다. 1. <u>해임요구</u> 2. <u>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u> 3. <u>문책경고</u> 4. <u>주의적 경고</u> 5. <u>주의</u>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 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 인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 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장감시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시장감시법인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시장감시법인”으로 본다.	
<신 설>		제414조의31(금융위원회의 승인) 시장감시법인은 정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4조의32(금융위원회의 승인) (김태년의원안과 같음)
<신 설>		제414조의32(준용규정) 시장감시법인에 대하여는 제410	제414조의33(준용규정) (김태년의원안과 같음)

현	행	김태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시장감시법인”으로 본다.</u>	

□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30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31은 시장감시법인이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고,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31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32는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업무집행정지, 해임요구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김태년의원안 제414조의32 및 이헌승의원안 제414조의33은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 등이 비밀누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들은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기관조치와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및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시장감시업무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

1) 거래소의 업무 추가(이헌승의원안)

□ 개정안은 거래소 업무에 지역소재 법인의 주권상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7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현 행	이헌승의원안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제377조(업무) ①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1의2. 지역소재 법인의 주권상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12.·13. (생략)	12.·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 조직관리규정」²³⁾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²⁴⁾ 등에 근거하여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설명

23) 「코스닥시장본부 조직관리규정」

제9조의2(지점 및 사무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 국내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1. 국내 비상장기업의 상장유치에 관한 사항

24)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별표1]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 및 업무분장

1. 코스닥시장부

서. 국내 비상장기업의 상장유치에 관한 사항

저. 비상장기업의 상장교육 및 상장관련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회와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거래소는 상장설명회 및 1:1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상장설명회 68건 및 컨설팅 501건을 실시하였음.

[표3] 최근 3년 상장설명회 및 컨설팅 현황

(단위: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상장설명회	수도권	13	14	12	39
	수도권 외	18	22	28	68
	소계	31	36	40	107
1:1 컨설팅	수도권	44	46	42	132
	수도권 외	136	174	191	501
	소계	180	220	233	633

(자료: 한국거래소)

- 개정안은 이와 같이 현재 거래소가 수행 중인 업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거래소의 지역기업 상장지원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기업의 자본시장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상장교육 및 상장관련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코스닥시장본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과 달리 그 대상을 “지역 소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를 “지역 소재 법인”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청산·결제업무의 위탁

□ 개정안들은 지정거래소로 하여금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8조제3항 신설).

현 행	김태년의원안·이현승의원안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② (생략) <신설>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는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4조부터 제400조까지(제396조 제1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소의 권리·의무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속한다.

□ 현행법 제323조의3²⁵⁾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²⁶⁾을 영위하려는 자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는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제377조²⁷⁾에서는 거래소의 업무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ATS 거래 포함)에 따른 청산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78조²⁸⁾에서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매매거래(ATS 거래 포함)에 따른 청산업무에 대하여는 인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법인 내에 청산결제본부를 두어 장내시장에 대한 청산·결제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2013년 9월에는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에 대한 인가를 별도로 취득하여 2014년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²⁹⁾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㉕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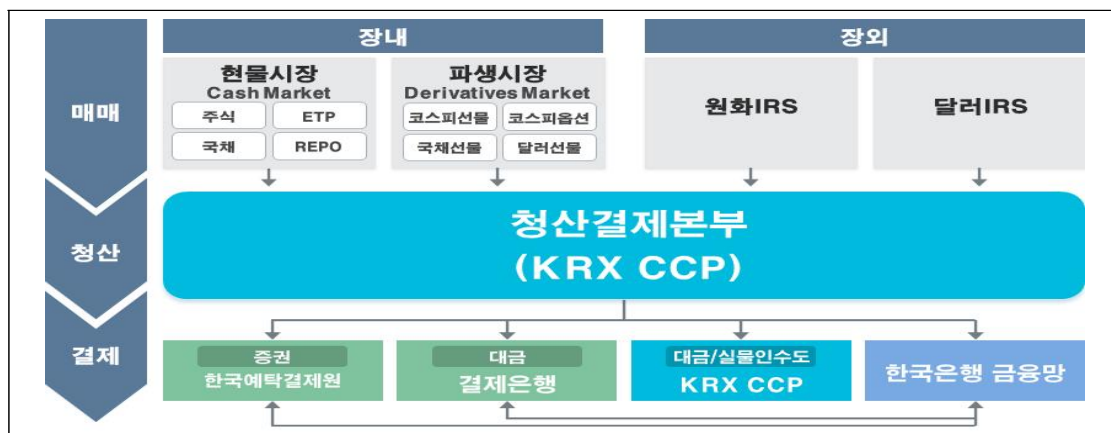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 청산·결제업무는 다수 거래의 통합차감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인바,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으로 시장별 거래소가 설립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청산·결제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들은 지정거래소가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청산·결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산·결제기능의 분산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대규모·실시간 매매거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부담하기 위한 대규모의 채원 및 자본이 필요한바, 장내시장에서의 대규모·실시간 거래에 대한 청산업무를 거래소 또는 지정거래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산체계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

29) 한국거래소 매매·청산·결제업무 체계(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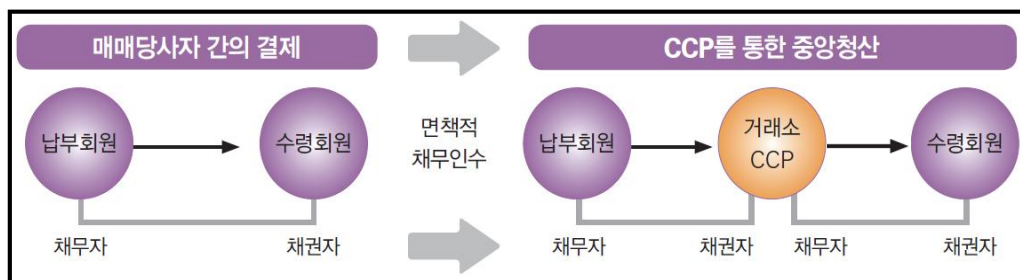


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⁰⁾

30) 중앙청산소로서 청산기관의 규모의 경제의 필요성(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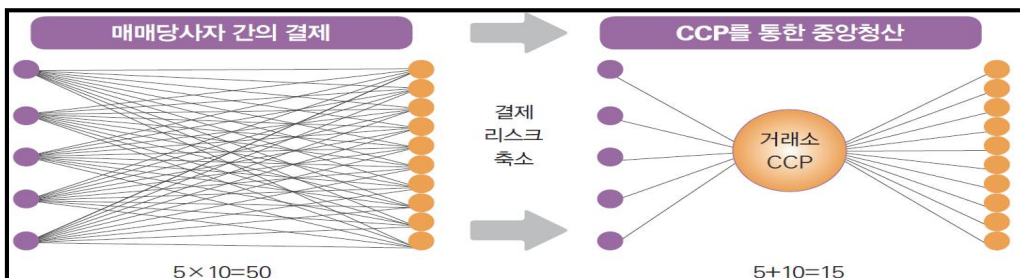
- 중앙청산소로서 회원간의 채권·채무 인수를 통해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부담하기 위한 대규모 채원·자본 필요

[매매당사자간 결제 vs CCP 중앙청산]



- 다자간 차감(상계)을 통해 결제증권·금액을 축소하여 결제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참가자(회원) 및 제반 시스템 필요

[다자간 차감에 따른 결제리스크 축소]



- 국제기준(PFMI*)에 따른 회원관리, 증거금·공동기금 적립 등 체계적 리스크 관리와 결제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대규모 조직·인력 필요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3) 거래소의 지배구조

□ 개정안들은 거래소 이사장의 명칭을 사장으로 변경하고, 이사회 정관을 거래소 임원에 상근 감사위원을 포함하며, 이사회 정원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거래소 이사회 내 시장별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80조, 제381조 및 제385조).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현승의원안
제380조(임원) ①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② (생략) ③ <u>이사장</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385조제1항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u>이사장</u> 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380조(임원) ① 거래소의 임원은 <u>사장</u> , 시장감시위원장 및 이사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사장</u> ----- ----- ----- ----- ----- ----- ----- ④ ----- -- <u>사장</u> ----- ----- ----- -----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현승의원안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u>이사장</u>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u>이사장</u>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의 사외이사(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u>위원</u>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u>위원</u>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생략) 제381조(이사회) ① 거래소에 <u>제380조 제1항 각 호의 자</u>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	-----. -----<u>사장</u>----- -----<u>사장</u>----- -----. ⑤ ----- ----- ----- ----- -----<u>위원(거래소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u>은----- -----.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381조(이사회) ① -----<u>제380조 제1항의 임원으로</u>----- -----. -----. ② -----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현승의원안
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u>설치한다</u>. ③ (생략)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래소에 <u>이사장·사외이사</u>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u>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u> 1. <u>사외이사인 이사 5인</u> 2. <u>협회가 추천하는 2인</u> 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u> ③ (생략)	----- ----- ----- -----<u>설치</u> <u>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 -----<u>사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거래소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외이사</u>----- -----. ② <u>제1항의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u> <삭 제>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들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 등 시장별로 거래소가 설립됨에 따라 거래소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지배구조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파생상품시장과 같은 소규모 거래소의 경우 대규모 이사회 구성이 불필요하므로 이사 정원 수(15

인 이내)를 삭제하고 상근 감사위원 선임 여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³¹⁾

31)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자율사항이나(「상법」 제415조의2),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임(「상법」 제542조의11).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이더라도 상근 감사위원의 설치에 의무사항이 아님.

「상법」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⑦ 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2제2항·제394조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 제407조·제412조 내지 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제1항제9호·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 이는 개정안들이 거래소와는 별도로 거래소지주회사에 상근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거래소에 대한 감사업무를 거래소지주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 또한, 단일시장을 개설하는 거래소의 경우 시장별 소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역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다만, 현행법은 거래소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5인,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하는 2인 및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원칙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바, 거래소의 공공성과 위원회의 대표성 및 구성의 탄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계 및 상장회사의 참여를 법률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래소 규정의 정비

- 개정안들은 회원관리규정에 회원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장규정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거래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87조, 제390조제3항 신설).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현승의원안
제387조(회원) ① (생략)	제387조(회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삭제>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회원의 종류에 관한 사항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90조(상장규정) ①·② (생략)	제390조(상장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혁신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상장 특례에 관한 사항
	2. 존속 가능성, 공시의 충실성 또는 거래질서를 현저히 훼손한 기업 등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헌승의원안
	<u>이 발행한 증권의 신속한 상장폐지 기준에 관한 사항</u> 3. <u>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고 있는 자회사의 상장기준 에 관한 사항</u>

□ 먼저, 각 개정안 제387조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소 회원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거래소가 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음으로, 각 개정안 제390조제3항은 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정하는 경우 혁신기업의 상장특례, 존속가능성·공시의 충실성 또는 거래질서를 현저히 훼손한 기업 등의 신속한 상장폐지 기준 및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 상장기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금융위원회의 고시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상장 지원,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및 자회사 상장기준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상장규정은 거래소가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핵심 규정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거래소의 자율적인 규정 제정권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주식소유의 제한

□ 개정안들은 외국거래소 외에 외국거래소지주회사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거래소 주식을 일정 한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6조제1항제2호).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현승의원안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2. <u>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u>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지주회사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헌승의원안
	----- ----- ----- -----
<신설>	2의2. <u>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거래소가</u>
	<u>소유하는 경우</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이는 거래소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거래소지주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기타

☐ 개정안들은 거래소지주회사 및 시장감시법인 제도의 도입에 따라 청문, 보고·조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3조, 제426조, 제436조, 제444조, 제445조 등).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헌승의원안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	제423조(청문) ----- ----- -----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헌승의원안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7의2. 제414조의17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신설>	7의3. 제414조의1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신설>	7의4. 제414조의30제1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신설>	7의5. 제414조의3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장감시법인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 ③ (생략)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u>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 ----- <u>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시장감시법인</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거래소</u> 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u>거래소(거래소가 제40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한 시장감시법인을 말한다)</u> ----- -----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헌승의원안
⑦·⑧ (생략)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u>거래소</u>, 협회 또는 <u>예탁결제원</u>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7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28.·29. (생략)	-----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 -----<u>거래소</u>, <u>시장</u> <u>감시법인</u>, <u>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u> ----- ----- -----. ②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 -----. 1. ~ 27의2. (현행과 같음) <u>27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u> <u>27의4.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4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u> <u>27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0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u> 28.·29. (현행과 같음)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헌승의원안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5조(벌칙)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2. ----- ----- -----제414조의13, 제414조의27제3항----- ----- ----- ----- -----
13. ~ 35. (생략)	13. ~ 35. (현행과 같음)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6. ----- 제327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 또는 제414조의1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7제2항을----- ----- -----
37. ~ 41. (생략)	37. ~ 41. (현행과 같음)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제414조의13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7제1항을----- -----
43. ~ 48. (생략)	43. ~ 48.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	제449조(과태료) ① ----- -----

현행	김태년의원안·이헌승의원안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3. (생략)	1. ~ 43. (현행과 같음)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 ----- -----제335조의7, 제379조, 제414조의5 또는 제414조의21을----- -----
44의2. ~ 48. (생략)	44의2. ~ 48. (현행과 같음)
<신설>	48의2. 제4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8의2. ~ 48의6. (생략)	48의3. ~ 48의7. (현행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와 같음)
49. (생략)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개정안들은 거래소지주회사 및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의처
02)6788-5111